

- 202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21. 10. 16.(토) 실시하는 “202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21. 10. 16.(토) 10:00 ~

- ☞ 시험당일 **09:20 까지** 해당 시험장(시험실)에 입실(**08:00**부터 입실 가능)
- ☞ 직렬(직류)별 시험시간

구분	직렬(직류)_구분모집		직급	시험시간	시험과목수	
공개 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10:00 ~ 11:40 (100분)	5과목	
	운전직(운전)		9급			
경력 경쟁	약무직(약무)		7급	10:00 ~ 11:00 (60분)	3과목	
	수의직(수의)					
	기술 계	보건직(보건)				9급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전기)				
	고 졸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연 구 직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학예연구직(학예일반)_미술사				
		학예연구직(학예일반)_역사학				
보건연구직(공중보건)						
	환경연구직(환경)					

-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사인펜 지참
-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응시표에서 본인 응시번호 확인)

2

시험장소

☞ 같은 직렬(직류)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직렬(직류) 및 응시번호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직렬(직류)_구분	직급	해당 응시번호 (시작번호 ~ 끝번호)	시험장소		
			시험장명 (소재지)	주소 및 주요 교통편	
행정직(일반행정)	7급	70100001 ~ 70100280	광안중학교 (수영구 광안동)	- 수영구 연수로310번길 127 -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7번 출구에서 약 900m	
		70100281 ~ 70100680	동아중학교 (수영구 광안동)	- 수영구 호암로 55 -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 6번 출구에서 약 700m	
		70100681 ~ 70101020	동해중학교 (동래구 명륜동)	- 동래구 시실로 19-39 -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2번 출구에서 약 500m	
		70101021 ~ 70101440	부산개성중학교 (부산진구 가야동)	- 부산진구 엄광로 176-12 - 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 5번 출구에서 약 900m	
		70101441 ~ 70101939	여명중학교 (동래구 사직동)	- 동래구 여고로52번길 9 - 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 2번 출구에서 약 600m	
운전직(운전)	9급	95900001 ~ 95900560	부산정보고등학교 (부산진구 양정동)	- 부산진구 화지로 24 -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3번 출구에서 약 850m	
		95900561 ~ 95900752	향도중학교 (부산진구 전포동)	- 부산진구 동성로118번길 44 -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8번 출구에서 약 400m	
약무직(약무)	7급	71100001 ~ 71100011	향도중학교 (부산진구 전포동)	- 부산진구 동성로118번길 44 -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8번 출구에서 약 400m	
수의직(수의)	7급	73400001 ~ 73400007			
기술계 고졸	보건직(보건)	9급			99100001 ~ 99100011
	공업직(일반기계)	9급			99400001 ~ 99400009
	공업직(일반전기)	9급			99500001 ~ 99500018
	시설직(일반토목)	9급			99200001 ~ 99200009
	시설직(건축)	9급	99300001 ~ 99300013		
연구직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41100001 ~ 41100051	다대중학교 (사하구 다대동)	- 사하구 다대로554번길 33 -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항역 1번 출구에서 약 200m
	학예연구직(학예일반)_미술사	연구사	41800001 ~ 41800046		
	학예연구직(학예일반)_역사학	연구사	41900001 ~ 41900048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44000001 ~ 44000173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45000001 ~ 45000136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1)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장(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8:00부터 시험실 개방)
 - ※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람
- 2)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3) 시험장에는 해당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 차량 등 외부 차량의 주차는 불가합니다.** 또한,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내 시설물 등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4)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 지참
- 5)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6)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 [단, **계산·통신·검색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 불가**]

-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임신부 등 화장실 이용 편의지원 대상자는 화장실 이용 가능(단,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8)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9)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표지와 개별과목의 문제책형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문제책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지 책형란에 본인의 문제책형을 반드시 표기(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1)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시험의 문제지 중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은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하는 <아래 표>의 과목**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회수하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문제 비공개 시험과목(부산시 자체 출제) - 25과목 >

- 7급 :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9급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환경보건, 공중보건
- 연구직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나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1) 득점은 전산기기(OMR)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답안은 아래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함

- 2)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직렬,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응시직렬,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됨)
- 5) 답안은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택 과목이 있는 직렬(직류)은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부정행위 등 금지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1)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 **외부인의 시험장(운동장 포함)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2)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검사 시 이상 증상(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2차 검사 및 문진표 작성 후 **지정된 별도장소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 출입이 불가합니다.(시험 중에도 착용)

- ※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신분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확인에 협조
- ※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KF-94마스크 착용을 권장함

4)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행동 수칙(붙임2 자료)**'을 준수하여 주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환기를 위해 창문, 출입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오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를 권장함
- ※ 시험종료 후, 퇴실 시 혼잡 방지를 위해 시험실별, 층별로 퇴실 시간을 조정함
- ※ 시험장은 시험시행 전·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함

5)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출입국 이력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

- ① (자진신고 등록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응시자 직접 등록
- ② (자진신고 운영기간) 10. 1.(금) 09:00 ~ 10. 15.(금) 18:00

※ 발열 등 유증상을 신고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발열검사 후 일반시험실이나 별도장소로 응시여부 결정

6)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기한까지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원활한 시험이 가능하며, 시험장 준비 등의 관계로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불가함
- 타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시험 여건 등에 따라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 ➡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 신청**

- ① (확진사실 신고)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알리고, 시험시행본부에 신고**
▶ 부산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2)
- ② (지정시설 입소) 사전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③ (시험응시 신청)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의사소견서) 별도시험장 시험응시 신청**
 - 신청기한 : **10.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확진자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별첨1 서식)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 ➡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신청**

- ① (자가격리 신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알리고**, 시험시행본부에 신고
▶ 부산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2)
- ② (시험응시 신청)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시험장 시험응시 신청**
 - 신청기한 : **10.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서(별첨2 서식) 및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제출
- ③ (외출허가 신청)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로부터 시험응시 임시 **외출 허가 신청**
 - 시험장소는 별도 전화로 안내하며, 외출 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대중교통 이용 금지)
 -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시험장 출발, 자택 복귀 시 보고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는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4 성적 사전공개 및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안내

- 1) 사전공개 기간 : 2021. 11. 1.(월) 09:00 ~ 11. 2.(화) 18:00
- 2) 사전공개 성적 : 과목별 원점수(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점수)
- 3) 성적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개별 열람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 조회)
- 4) 이의신청 기간 : 2021. 11. 1.(월) 09:00 ~ 11. 3.(수) 18:00
- 5) 이의신청 방법 : 전화 신청(☎ 051-888-1971 ~ 1975) ※ 09:00 ~ 18:00까지 가능
 - ※ 이의신청 기간 중 답안지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방문하여 열람 가능(신분증 지참)
 - ※ 이의신청 검증 결과는 별도로 개별 통보
- 6) 유의사항 :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을 그대로 최종 확정함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1) 발 표 일 : 2021. 11. 10.(수)
- 2) 발표방법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공무원시험정보(gosi.busan.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

5

기타사항

- ☞ 자격증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가산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부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2021.10.15.까지)
- ☞ 행정직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자 중 편의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와 편의지원 내용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자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1 ~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임신부 등 필기시험 편의지원 대상자

2.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행동 수칙

별첨 1~6.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서식) 등

[붙임 1]

2021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편의지원 대상자

□ 대상자 및 편의지원 내용

응시 직렬(직류)	응시번호	편의지원 내용
행정직(일반행정)	70101937	-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이용(단, 화장실 이용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됨)
행정직(일반행정)	70101938	-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행정직(일반행정)	70101939	-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이용(단, 화장실 이용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이용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종사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